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예·적금 및 신탁		불입액의 100%	
유가증권	주식	대용가격의 100% 단, 대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건전성 분류시점 시가의 50%	한국증권거래소 공시
	회사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금융채 포함)	대용가격의 100%	
	수익증권	대용가격의 100%	
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보험)금액의 100%	
부동산등	대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 중기, 선박 등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 차감	건설교통부 공시 감정평가업자 작성
	기계, 기계류		
리 스 자 산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 가액의 80%(평가액). 단, 6개월이상 연체시 동 평가액의 80%, 1년이상 연체시 동평가액의 50%	범용성있는 물건으로서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70%
기 타		시가의 70%	
경매진행중인 담보		최종법사가	

<유의사항>

-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체 내규에서 담보로 취득을 제한한 물건은 회수예상가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함.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로서 3년연속 흑자시현, 제3자인수 등으로 정상화 단계에 도달하여 채권회수가 확실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총채권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봄.
 - ①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
 -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기업체
 - ③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중인 기업체
 - ④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
4.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중인 기업체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기업체로서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 미만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하여 산정한 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봄(화의 및 회사정리절차기간중 직전연도에 흑자를 시현한 경우에 한함)
5.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 $\frac{\text{잔여년수}}{\text{내용년수}}$ 를 말하며, 관련세법상의 내용년수 계산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연수를 차감함
6.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주식(증권업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①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 ②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 ③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①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 ②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의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